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규정번호	KTC-D-19
제정일자	2005.12.01
개정일자	2017.11.07
관리부서	교 학 처

1/27

강원관광대학교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개정 2006.1.13, 2010.3.1, 2012.3.1, 2012.3.21, 2013.8.8, 2014.7.11, 2016.12.19
2017.9.25, 2017.11.6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관광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의 교육 및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수업적평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교수업적의 평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교수업적 평가영역 및 정의) ① 이 규정에서 교수업적평가라 함은 전임교수의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봉사, 산학협력(취업)의 실적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2.3.1)

② 교수업적 평가영역별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1)

1. 학문연구영역 : 연구(국내 및 국외 연구논문 발표, 게재 저서, 번역, 특허 등), 연수, 연구프로젝트참여 등 전공학문의 지성적, 과학적 활동과 연관된 모든 형태의 연구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생교육영역 : 교육과정 운영 및 개발, 강의, 실습, 수업평가 등의 제반 교육활동 사항.
3. 학생지도영역(봉사활동) : 학생취업, 학생상담, 특별활동지도, 교내·외 봉사 또는 학교발전 등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여하는 제반 활동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영역(산학협력업적):산학협력(방문·교육) 및 연구비수혜, 취업활동, 현장실습(인턴십) 지도, 기부 모금 등

제 3 조의 2 (교원승진임용 평정) ① 교원에 대한 승진심사는 제3조의 교수업적평가이외에 교원승진임용심사를 하여야 하며 평정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08.08.)

- 1.교육성과개선을 위한 노력
- 2.대학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 3.교육자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한 노력
- 4.교수연구 및 학생지도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규정번호	KTC-D-19
제정일자	2005.12.01
개정일자	2017.11.07
관리부서	교 학 처

2/27

- 제 4 조 (교수업적 평가대상) ① 교수업적 평가대상은 이 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 이상의 교수로 한다. (개정 2013.08.08.)
- ② 비전임교원인 명예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외국인교수, 초빙교수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3.1.,2013.08.08)

제 2 장 심의기구

- 제 5 조 (교수업적 평가위원회) ① 교수업적을 관리·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교수업적평가위원은 교학처장을 당연직위원장으로 하며, 총장이 위촉하는 4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0.3.1, 2012.3. 2016.12.19)
- ③ 교수업적 평가위원의 임기는 보직임용 기간으로 한다. 단, 총장이 위촉한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0.3.1)
- ④ 교수업적평가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업적관리·평가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2. 교수업적관리 자료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수업적관리 서식결정에 관한 사항
 4. 교수업적·평가 관련규정의 개·폐 발의에 관한 사항
- ⑤ 교수업적평가위원은 교수업적평가 영역 중 교수연구실적에 대한 평가는 교직원인사규정 제 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업적평가

- 제 6 조 (교수업적평가기간) ① 업적평가는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기간으로 한다. 단, 재임용 및 승진심사 기간은 재임용 및 승진 대상 연월일을 기준으로 최저 승진소요 년수만을 평가한다.(개정 2010.3.1, 개정 2012.3.1)
- ② 재임용, 승진 또는 재계약을 위한 심사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기간에 대해 예외가 있을 수 있다.(개정 2012.3.1.2013.08.08)

직 위	재 임 용	승 진	비 고
조 교 수	최근 4년이내	최근 4년이내	
부 교 수	최근 5년이내	최근 10년이내	
교 수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규정번호	KTC-D-19
제정일자	2005.12.01
개정일자	2017.11.07
관리부서	교 학 처

3/27

③ 정년보장교원은 정관 제45조3과 제45조4를 적용하며 교수승진이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다.
(개정 2012.3.1)

제 7 조 (교수업적평가) ①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심사대상 교수의 업적을 평가함에 있어 교수업적평가표(별지제1,2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평가를 위해 교수업적평가세부 기준 (별지제3호서식)를 총장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0.3.1)

② 업적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수강의평가는 매학기 수강학생들에게 강의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소정의 평가양식에 의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업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2.3.1)

④ 교수업적평가는 승진, 재임용과 별도로 매년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2.3.1)

제 8 조 (교수업적평가 방법과 절차) ① 교학처장은 평가심사대상 교원에게 임용시기 4개월전에 교수업적평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개정 2010.3.1, 2012.3.1, 2016.12.19)

② 임용,승진 및 재임용대상 교원은 임용일 3개월 이전에 교수업적평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를 작성하여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총장은 교수업적평가위원을 구성하여 교수업적평가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개정 2010.3.1)

④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 받아 임용제청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10.3.1)

⑤ 총장은 교수업적평가를 위해 교수업적평가표와 이에 대한 세부평가를 위해 교수업적평가세부기준표를 교수업적평가위원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0.3.1)

⑥ 교수업적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교수업적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업적이 없는 것으로 하며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3.1)

제 8 조의 2 (평가 관련 자료의 제공) 다음 각 호의 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구시 평가대상자의 평가대상기간 중 업적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3.1)

1. 교학처 : 수업 관련자료, 인사 관련자료, 전공심화과정·기타 교수업적평가 영역에 필요한 자료
2. 교학처 : 학생지도 및 장학 실적, 학생취업, 봉사자료 및 기타 교수업적평가 영역에 필요한 자료(개정 2016.12.19)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규정번호	KTC-D-19
제정일자	2005.12.01
개정일자	2017.11.07
관리부서	교 학 처

4/27

3. 기획처 : 홍보, 입시 및 사업실적 관련자료(충원율, 등록율, 중도탈락율 등 기타 교수업적평가에 필요한 자료) 및 기타 교수 업적평가영역에 필요한 자료
4. 산학협력단 : 산학, 연구실적, 기부금모금, 학교기업 관련자료 및 기타 교수업적 평가영역에 필요한 자료
5. 행정지원처 : 장학, 기부금, 등록금 납부 관련자료 및 기타 교수업적평가영역에 필요한 자료

제 9 조 (교수업적 평가기준 및 점수) ① 교수의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는 제6조 ②의 심사기간과 연구실적이 2점(200%)이상 각가 충족되어야 업적평가를 할 수 있다. 단 신규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전임-조교수)에 대해서는 1점(100%)이상 충족되어야 한다.(개정 2012.3.1)

② 교수업적평가에 의한 심사를 거쳐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4개의 평가영역 총점합계를 충족하여야 하며, 2개 이상 평가영역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승진 및 재임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교수업적평가 영역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3.8.8.)

교원구분	일반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원				
	학문 연구	학생 교육	학생지도·봉사	산학 협력	합계	학문 연구	학생 교육	학생지도·봉사	산학 협력	합계
평가배점	30	30	25	15	100	15	25	30	30	100
조교수 (신규채용)	20점 이상	20점 이상	17점 이상	8점 이상	65점 이상	8점 이상	17점 이상	20점 이상	20점 이상	65점 이상
조교수	20점 이상	20점 이상	18점 이상	8점 이상	66점 이상	8점 이상	18점 이상	20점 이상	20점 이상	66점 이상
부교수	20점 이상	20점 이상	19점 이상	8점 이상	67점 이상	8점 이상	19점 이상	20점 이상	20점 이상	67점 이상

④ 교원의 승진에 필요한 교수업적평가 영역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 2012.3.1, 2013.8.8)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규정번호	KTC-D-19	5/27
제정일자	2005.12.01	
개정일자	2017.11.07	
관리부서	교 학 처	

교원구분	일반교원					산학협력 증점교원				
	학문 연구	학생 교육	학생지도·봉사	산학 협력	합계	학문 연구	학생 교육	학생지도·봉사	산학 협력	합계
평가배점	30	30	25	15	100	15	25	30	30	100
조교수→부교수	24점 이상	22점 이상	22점 이상	12점 이상	80점 이상	12점 이상	22점 이상	22점 이상	24점 이상	80점 이상
부교수→교수	26점 이상	27점 이상	24점 이상	13점 이상	90점 이상	13점 이상	23점 이상	28점 이상	26점 이상	90점 이상

제 9조의 2(교원승진 평가방법 및 기준) ①교원승진임용 심사는 승진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별표5] 교원승진임용 심사신청서를 바탕으로 [별표6]의 교원승진임용심사 평정표에 따라 심사한다. (신설 2013.08.08.)

② 교원승진은 제9조에서 정한 승진에 필요한 항목의 충족과 [별표 6]의 교원승진임용심사 평정결과 평균"B"(16점) 미만의 대상 교원은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3.08.08.)

제 10 조 (연구실적심사) ① 연구실적심사는 교직원인사규정 제13조에 의거 심사하되 심사기간 내에 게재 및 발간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임용 및 승진일 60일 전까지 연구실적이 게재 및 발간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연구실적 예정증명서를 포함하여 제9조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2012.3.1.)

② 연구성과물로 인정되는 게재인정 학술지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한다.(개정 2012.3.1.)

1. 국제저명 학술지(SCI, A&HCI, SSCI) 및 기타 국제 학술지(SCIE, Index Medicus)
2.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3. 논문집(전국 2/4년제 대학논문집을 말한다.)
4. 연구 출판물(연구프로젝트, 저역서)
5. 학과, 연구소, 기타 단체 논문집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전항의 학술지중 1,2,3호의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실적은 심사를 생략한다. (개정2012.3.1)

④ 전공분야의 교수활동에 대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될시 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1.)

㉠ 특허취득

- 발명 : 상한 인정률 : 국제 1건 120%, 국내 1건 100%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규정번호	KTC-D-19
제정일자	2005.12.01
개정일자	2017.11.07
관리부서	교 학 처

6/27

-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 : 건당 상한 인정률 80%

⑤ 승진 및 재임용 등의 심사과정을 통해 평가 되어진 동일한 내용의 논문과 기타 연구 출판물은 재평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21)

제 11 조 (업적서류 제출) ① 재임용 및 승진임용 대상자인 전임교수는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서식의 교수업적평가신청서를 지정된 기일내에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수업적평가위원은 동 규정 제6조에 의한 업적확인 및 평가를 한 후 총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

제 4 장 교수업적평가 관리

제 12 조 (교수업적 평가결과의 활용) 교수업적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승진, 재임용(정년보장교원 임용 포함)
2. 신규임용 (계약제 임용)
3. 성과급(또는 연구보조비) 지급
4. 우수교육교수 및 우수연구교수 선정과 포상 등의 심사자료
5. 기타 교수업적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 13 조 (교수업적평가 업무분장 및 관리) ① 교수업적 평가업무는 교학처에서 담당하며 업적평가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요구 및 협조를 구할 수 있다.(개정 2016.12.19)

제 14 조 (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적 관리·평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5 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3.1)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규정번호	KTC-D-19
제정일자	2005.12.01
개정일자	2017.11.07
관리부서	교 학 처

7/27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재임용 및 승진된 교원은 이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재임용 및 승진된 교원은 이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재임용 및 승진된 교원은 이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재임용 및 승진된 교원은 이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재임용 및 승진된 교원은 이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규정번호	KTC-D-19
제정일자	2005.12.01
개정일자	2017.11.07
관리부서	교 학 처

8/27

제2조 (경과조치) 이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재임용 및 승진된 교원은 이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모든 행한 행위는 이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모든 행한 행위는 이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규정번호	KTC-D-19
제정일자	2005.12.01
개정일자	2017.11.07
관리부서	교 학 처

9/27

(별지 제2호서식) (제7조1항관련) (제정'05.12.1)

예·체능계 실기에 대한 연구실적 심사기준표

구분	연구업적	평점	
미술	가. 국제적 미술대전, 산업디자인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선 : 1회 ◦특선이상 : 1회 ◦국제전 출품 : 1회 	0.5점 1점 0.5점	
	나. 지역규모 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선이상 : 1회 ◦입선 : 1회 	0.5점 0.25점	
	다. 공인된 개인전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실내 및 야외전시장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를 지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전 : 1회 ◦2인전 : 1회 ◦기획전 : 1회 *기획전의 경우 전시회 안내장에 「기획전」 이라고 명시되고 참여작가 개인별 2점이상 출품되는 기획전	1점 0.7점 0.5점	
	라. 공인된 단체전의 회원전 및 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선 : 1회 ◦특선이상 : 1회 *공인된」의 범위는 출품작가들이 해당분야의 전공자들인 단체 전 및 공모 전에 한정한다.	0.5점 0.5점	
	마. 공인된 국내외 초대전 출품 : 1회 * 전시회 안내장에 「초대전」, 「초대작가전」으로 명시했을 경우의 초대전	0.7점	
	바. 국제전 심사위원 : 1회	1점	
	사. 미술대전 등 심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대전,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 1회 ◦공인된 공모전 심사위원 : 1회 ◦시.도 단위 미술전람회 심사위원 	1점 0.5점 0.25점	
	아.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 출원	1점	
	체육	가. 공인된 체육단체에서 개인 연구발표회 : 1회	1점
		나. 올림픽 경기출전 : 1회	1점
다. 전국대회 입상 : 1회		0.5점	
라. 국제공인 심판자격 : 1회		1점	
창작실기 활동	가. 전국을 단위로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특선 : 1회	1점	
	나. 전국을 단위로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입선 : 1회	0.5점	
음악	가. 국내외에서 인정된 독창회, 독주회, 개인작곡발표회 : 1회	1점	
	나. 국내외에서 인정된 협연 및 전문연주단체에 의한 창작품 초연:1회	0.7점	
	다. 인정된 발표회의 3중창이상, 3 중주이상, 단독음악회 및 3인 이상 작품발표회 및 반주 : 1회	0.5점	
	라. 인정된 종합연주회 등	0.3점	
기타	가. 학.예술관계 및 창작실기 활동 분야의 훈장 : 1회	2점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규정번호	KTC-D-19
제정일자	2005.12.01
개정일자	2017.11.07
관리부서	교 학 처

10/27

(별지 제2호서식) (제7조1항관련) <개정 2006.1.13, 2010.3.1, 2012.3.1, 2014.7.11>

교수업적(승진·재임용)평가표 (일반전임교원)

피평가자		평정자 (인사위원)				
소속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직급						
성명						

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점				
			A	B	C	D	E
1 학문연구 (30점)	① 연구실적	10	10	8	6	4	2
	② 연구실적물의 질	10	10	8	6	4	2
	③ 교수연수실적(연수 및 산업체현장연수) 및 연구프로젝트 참여	10	10	8	6	4	2
	소 계	30					
2 학생교육 (30점)	① 강의여건조성실적 및 정원관리	15	15	12	9	6	3
	② 교육과정개발실적	10	10	8	6	4	2
	③ 교원지위향상실적(포상 및 징계사항)	5	5	4	3	2	1
	소 계	30					
3 학생지도 ·봉사 (25점)	① 학생취업지도 실적	10	10	8	6	4	2
	② 현장실습지도/동아리지도 교수활동실적	5	5	4	3	2	1
	③ 사회봉사활동 / 대학발전기여 실적	10	10	8	6	4	2
	소 계	25					
4 산학협력 (15점)	① 취업지도	8	8	6	4	3	2
	② 산학협력활동	7	7	5	4	3	2
	소 계	15					
총 계		100					
적격 여부 판정		적격() 부적격()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규정번호	KTC-D-19	11/27
제정일자	2005.12.01	
개정일자	2017.11.07	
관리부서	교 학 처	

(별지 제3-1호서식) (제7조1항관련) <개정 2006.1.13, 2010.3.1, 2013.8.8, 2014.7.11, 2017.9.25, 2017.11.7>

교수업적평가세부기준표 (일반전임교원)

평점 항목	평 가 기 준						비고
	세부평점 항목	등급	평 점 항 목 세 부 기 준				
① 연구실적 (10점)	구분		승진		재임용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교수	조교수 (신규채용)	부교수	교수
	A	6점이상	7점이상	4점이상	5점이상	6점이상	
	B	5점이상	6점이상	3점이상	4점이상	5점이상	
	C	4점이상	5점이상	2점이상	3점이상	4점이상	
	D	3점이상	4점이상	1점이상	2점이상	3점이상	
	E	2점이상	2점이상		1점이상	2점이상	
	교직원 인사규정 제14조(승진)2항 및 제19조(재임용)2항에 의거 연구실적이 반드시 충족될 시 평가하는 항목임						
② 연구실적물 의 질 (10점)	A	국제학회지,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2건이상)/예체능분야:창작, 전시, 발표, 초대, 출판대상(1위)/국제특허(PCT)/석·박사학위논문					
	B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1건)/저역서/예체능분야:창작, 전시, 발표, 초대, 출판금상(2위)/국내특허					
	C	일반학회지 / 본 대학 및 타 대학논문집(학과/연구소논문집제외) / 예체능분야:창작, 전시, 발표, 초대, 출판은상(3위)/국내외 실용신안					
	D	기술지도보고서(학술진흥법관련규정에의거)/전공분야의 교수활동관련(현장프로그램, 산업체프로젝트)/예체능분야:창작, 전시, 발표, 초대, 출판 동상(4위 이하)/국내외 실용신안(의장)/현장실습보고서					
	E	기타					
③ 교수연수 실적 및 연구프로젝트 참여실적 (10점)	A	전공연수(원격연수포함):48시간이상(1일6h인정)/산업체현장지도·연수:2월이상/교육부 등 공인된 공인기관 연구프로젝트 참여(1건 이상)					
	B	전공연수(원격연수포함):36시간이상(1일6h인정)/산업체현장지도·연수:1월이상/광역단체 등 공인기관 연구프로젝트 참여(1건 이상)					
	C	전공연수(원격연수포함):24시간이상(1일6h인정)/산업체현장지도·연수:15일 이상/기초단체 및 공인연구기관 프로젝트계획서 제출실적(1건 이상)					
	D	전공연수(원격연수포함):12시간이상(1일6h인정)/산업체현장지도·연수 10일 이상					
	E	전공연수(원격연수포함):6시간이상(1일6h인정)/산업체현장지도·연수:10일 미만					
		※ 교육부 등 교육연수기관(산업체포함) 및 학회 등의 공인된 연수실적을 말함.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규정번호	KTC-D-19
제정일자	2005.12.01
개정일자	2017.11.07
관리부서	교 학 처

12/27

평점 항목	평가 기준			비고
	세부평점 항목	등급	평점 항목 세부 기준	
① 강의여건 조성 실적 및 정원관리 (15점)	A		*신입생충원율 100%이상(학과/개인별공통:충족) + 재학생 충원율 90%이상 + 중도탈락율 5% + 휴결강 0회	*평가 기간내 평균 / 공통 충족
	B		*신입생충원율 95%이상(학과/개인별공통:충족) + 재학생 충원율 80%이상 + 중도탈락율 6% + 휴결강 1회	
	C		*신입생충원율 90%이상(학과/개인별공통:충족) + 재학생 충원율 70%이상 + 중도탈락율 7% + 휴결강 2회	
	D		*신입생충원율 85%이상(학과/개인별공통:충족) + 재학생 충원율 60%이상 + 중도탈락율 8% + 휴결강 3회	
	E		*신입생충원율 85%미만(학과/개인별공통:충족) + 재학생 충원율 50%이상 + 중도탈락율 9% + 휴결강 4회	
	※신입생 충원율은 정원외(편제정원의 정원외,산업체위탁생,군위탁생)를 포함하되, 산업체와 군위탁생은 신입생 충원수를 편제정원에 합산함.			
② 학생 교육 (30)	A		(대학/학과) 정규교육과정 외 운영실적 및 참여실적(2년) + -전공심화과정,산업체위탁교육,평생교육 및 교수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 각종평가 및 프로젝트 운영실적(4회) -대학특성화,NCS교수학습,기관평가,4년제평가,교원양성평가 등	*평가 기간내 평균 / 공통 충족
	B		(대학/학과) 정규교육과정 외 운영실적 및 참여실적(1년) + -전공심화과정,산업체위탁교육,평생교육 및 교수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 각종평가 및 프로젝트 운영실적(3회) -대학특성화,NCS교수학습,기관평가,4년제평가,교원양성평가 등	
	C		(대학/학과) 정규교육과정 외 운영실적 및 참여실적(6월) + -전공심화과정,산업체위탁교육,평생교육 및 교수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 각종평가 및 프로젝트 운영실적(2회) -대학특성화,NCS교수학습,기관평가,4년제평가,교원양성평가 등	
	D		(대학/학과) 정규교육과정 외 운영실적 및 참여실적(3월) + -전공심화과정,산업체위탁교육,평생교육 및 교수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 각종평가 및 프로젝트 운영실적(1회) -대학특성화,NCS교수학습,기관평가,4년제평가,교원양성평가 등	
	E		(대학/학과) 정규교육과정 외 운영실적 및 참여실적(3월미만) + -전공심화과정,산업체위탁교육,평생교육 및 교수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 각종평가 및 프로젝트 운영실적이 없는자 -대학특성화,NCS교수학습,기관평가,4년제평가,교원양성평가 등	
③ 교원지위 향상실적 (포상 및 징계사항) (5점)	A		대학구조조정 제외학과 + 징계사실이 없는자 + 행정수행능력 및 실적양호한 자 / 훈·포장 및 교육부총리,장·차관급이상 표창	*평가 기간내 평균 / 개별 충족 * 교육부 및대학 차원의 구조 조정 제외
	B		대학구조조정 학과(통.폐합,정원감축 등) + 징계처분(경고)자 + 사법기관처분(기소유예)자(표창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 행정수행능력 및 실적 중 한번 경고 받은 자 / 광역단체장, 총장이상 표창	
	C		대학구조조정 학과(통.폐합,정원감축,신설 등) + 징계처분(견책)자 + 사법기관처분(벌금형)자 + 행정수행능력 및 실적 중 두번 경고 받은 자 / 기초단체장이상 표창	
	D		대학구조조정 학과(통.폐합,정원감축,폐과후 신설 등) + 징계처분(감봉이상)자 + 사법기관처분(집행유예 이하)자 + 행정수행능력 및 실적중 세번 경고받은 자 / 사회단체장이상 표창(공로패)	
	E		대학구조조정 학과(통.폐합,정원감축,폐과후신설,전공전환,학과전환발령 등) + 징계처분(정직이상)자 + 사법기관처분(집행유예 이상)자 행정수행능력 및 실적이 극히 불량한 자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규정번호	KTC-D-19
제정일자	2005.12.01
개정일자	2017.11.07
관리부서	교 학 처

13/27

평점 항목	평 가 기 준			비고
	세부평점항목	등급	평 점 항 목 세 부 기 준	
학생 지도 ·봉사 (25)	① 학생취업 실적 (10점)	A	*학과취업률 75% 이상 (학과/개인별공통:충족) -20명 이상의 학과는 소속학과의 지도(반) 취업률 (기 취업자 제외)	*평가 기간내 평균 / 공통 충족
		B	*학과취업률 70% 이상 -20명 이상의 학과는 소속학과의 지도(반) 취업률 (기 취업자 제외)	
		C	*학과취업률 65% 이상 -20명 이상의 학과는 소속학과의 지도(반) 취업률 (기 취업자 제외)	
		D	*학과취업률 60% 이상 -20명 이상의 학과는 소속학과의 지도(반) 취업률 (기 취업자 제외)	
		E	*학과취업률 60% 미만 -20명 이상의 학과는 소속학과의 지도(반) 취업률 (기 취업자 제외)	
	② 현장실습 지도 및 동아리 학생지도 교수활동 실적 (5점)	A	*동아리 지도교수 2년이상/기타 대학승인 학생지도실적 (연:4회이상) / 현장실습 지도실적 4회이상/(간호)지도교수 개인별 국가고시 합격률 (95%이상)	*평가 기간내 평균 / 개별 충족
		B	*동아리 지도교수 1년이상 / 기타 대학승인 지도실적 (연:3회이상) / 현장실습 지도실적 3회이상/(간호)지도교수 개인별 국가고시 합격률 (90%이상)	
		C	*동아리 지도교수 6월이상 / 기타 대학승인 지도실적 (연:2회이상) / 현장실습 지도실적 2회이상/(간호)지도교수 개인별 국가고시 합격률 (85%이상)	
		D	*동아리 지도교수 6월미만 / 기타 대학승인 지도실적 (연:1회이상) / 현장실습 지도실적 1회이상/(간호)지도교수 개인별 국가고시 합격률 (80%이상)	
		E	*실적이 없는 자	
			*학생지도실적 중 대회입상시 대회 1회당 1점, 2인이상 지도하는 경우 1/n	
	③ 사회봉사 활동 및 대학발전 기여실적 (10점)	A	사회봉사활동 연(5)시간이상 / 대학본부보직(행정부처장, 단장)1년이상 외부기관 단체로부터 장학, 기부금, 기자재(300만원이상)를 대학에 유치한 실적 / 국제기구 및 정부기관 지원활동(임원 자문 및 심사)	*평가 기간내 평균 / 개별 충족
		B	사회봉사활동 연(4)시간이상 / 학과보직(학과장) 1년이상 외부기관 단체로부터 장학, 기부금, 기자재(200만원이상)를 대학에 유치한 실적 / 광역자치단체, 대학 및 기초자치단체 지원활동(임원 자문 및 심사)	
		C	사회봉사활동 연(3)시간이상 / 기타 보직수당을 받는 보직 1년이상 외부기관 단체로부터 장학, 기부금, 기자재(100만원이상)를 대학에 유치한 실적 / 일반기업지원 활동(임원 자문 및 심사)	
		D	사회봉사활동 연(2)시간이상 / 대학규정에 의한 각종위원회 위원 / 외부기관 단체로부터 장학, 기부금, 기자재(50만원이상)를 대학에 유치한 실적	
E		사회봉사활동 연(2)시간미만 / 외부기관 단체로부터 장학, 기부금, 기자재(50만원미만)를 대학에 유치한 실적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규정번호	KTC-D-19
제정일자	2005.12.01
개정일자	2017.11.07
관리부서	교 학 처

14/27

평점 항목	평 가 기 준			비고
	세부평점 항목	등급	평 점 항 목 세 부 기 준	
산학 협력 (15점)	① 취업지도 (8점)	A	산업체 취업추천 20회이상 / 산업체 발굴 및 방문실적 10회이상	*평가 기간내 평균 / 개별 충족
		B	산업체 취업추천 18회이상 / 산업체 발굴 및 방문실적 8회이상	
		C	산업체 취업추천 16회이상 / 산업체 발굴 및 방문실적 6회이상	
		D	산업체 취업추천 14회이상 / 산업체 발굴 및 방문실적 4회이상	
		E	산업체 취업추천 12회이상 / 산업체 발굴 및 방문실적 2회이상	
	② 산학협력 활동 (7점)	A	산학군관 협력체결실적 (개인별:5개)업체이상 / 산업체(기술/경영/인턴십)지도 5회이상 / 산학협력교육 4회이상 / 사업훈련교육 4회이상 / 연구비유치 1천만원이상 (항목별/1년기준)	*평가 기간내 평균 / 개별 충족
		B	산학군관 협력체결실적 (개인별:4개)업체이상 / 산업체(기술/경영/인턴십)지도 4회이상 / 산학협력교육 3회이상 / 사업훈련교육 4회이상 / 연구비유치 8백만원이상 (항목별/1년기준)	
		C	산학군관 협력체결실적 (개인별:3개)업체이상 / 산업체(기술/경영/인턴십)지도 3회이상 / 산학협력교육 2회이상 / 사업훈련교육 4회이상 / 연구비유치 6백만원이상 (항목별/1년기준)	
		D	산학군관 협력체결실적 (개인별:2개)업체이상 / 산업체(기술/경영/인턴십)지도 2회이상 / 산학협력교육 1회이상 / 사업훈련교육 4회이상 / 연구비유치 4백만원이상 (항목별/1년기준)	
		E	산학군관 협력체결실적 (개인별:1개)업체이상 / 산업체(기술/경영/인턴십)지도 1회이상 / 산학협력교육 1회미만 / 사업훈련교육 4회이상 / 연구비유치 4백만원미만 (항목별/1년기준)	

※ 평가점수는 세부평점 항목별 점수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규정번호	KTC-D-19
제정일자	2005.12.01
개정일자	2017.11.07
관리부서	교 학 처

15/27

교수업적(승진·재임용)평가표 (산학협력중점교원)

피평가자		평 정 자 (인사위원)				
소 속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직 급						
성 명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평 점				
			A	B	C	D	E
1 학문연구 (15점)	① 연구실적	5	5	4	3	2	1
	② 연구실적물의 질	5	5	4	3	2	1
	③ 교수연수실적(연수 및 산업체현장연수) 및 연구프로젝트 참여	5	5	4	3	2	1
	소 계	15					
2 학생교육 (25점)	① 강의여건조성실적 및 정원관리	10	10	8	6	4	2
	② 산학군관 교육과정 개발실적	10	10	8	6	4	2
	③ 교원지위향상실적(포상 및 징계사항)	5	5	4	3	2	1
	소 계	25					
3 학생지도 ·봉사 (30점)	① 학생취업지도 실적	15	15	12	9	6	3
	② 학생취업 프로그램운영 및 동아리 지도교수 활동실적	5	5	4	3	2	1
	③ 사회봉사활동 / 대학발전기여 실적	10	10	8	6	4	2
	소 계	30					
4 산학협력 (30점)	① 취업지도	10	10	8	6	4	2
	② 산학협력활동	10	10	8	6	4	2
	③ 산학연 참여활동	10	10	8	6	4	2
	소 계	30					
총 계		100					
적격 여부 판정		적격() 부적격()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규정번호	KTC-D-19
제정일자	2005.12.01
개정일자	2017.11.07
관리부서	교 학 처

16/27

(별지 제3-2호서식) <신설 2013.8.8, 개정 2014.7.11, 2017.9.25, 2017.11.7>

교수업적평가세부기준표 (산학협력중점교원)

평점 항목	평가 기준						비고
	세부평점 항목	등급	평점 항목 세부 기준				
학문 연구 (15)	① 연구실적 (5점)	구분	승진		재임용		
			조교수 → 부교수	부교수 → 교수	조교수 (신규채용)	부교수	교수
		A	5점이상	6점이상	3점이상	4점이상	5점이상
		B	4점이상	5점이상	2점이상	3점이상	4점이상
		C	3점이상	4점이상	1.5점이상	2점이상	3점이상
		D	2점이상	3점이상	1점이상	1.5점이상	2점이상
	E	1점이상	1점이상	1점미만	1점이상	1점이상	
		교직원 인사규정 제14조(승진)2항 및 제19조(재임용)2항에 의거 연구실적이 반드시 충족될 시 평가하는 항목임					
	② 연구실적물의 질 (5점)	A	국제학회지, 한국연구재단(등재지)/예체능분야:창작, 전시, 발표, 초대, 출판 대상(1위)/국제특허(PCT)/석·박사학위논문				
		B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저역서/예체능분야:창작, 전시, 발표, 초대, 출판 금상(2위) / 국내특허				
		C	일반학회지 / 본대학 및 타대학 논문집(학과/연구소논문집제외)/예체능분야:창작, 전시, 발표, 초대, 출판 은상(3위)/국내외실용신안				
		D	기술지도보고서(학술진흥법관련규정에의거)/전공분야의 교수 활동관련(현장프로그램, 산업체프로젝트)/예체능분야:창작, 전시, 발표, 초대, 출판 동상(4위 이하)/국내외 실용신안(의장)/현장 실습보고서				
		E	기타				
	③ 교수연수 실적 및 연구프로젝트 참여실적 (5점)	A	전공연수(원격연수포함):48시간이상(1일6h인정)/산업체현장지도·연수:4월이상/교육부 등 공인된 공인기관 연구프로젝트 참여(1건 이상)				
		B	전공연수(원격연수포함):36시간이상(1일6h인정)/산업체현장지도·연수:3월이상/광역단체 등 공인기관 연구프로젝트 참여(1건 이상)				
		C	전공연수(원격연수포함):24시간이상(1일6h인정)/산업체현장지도·연수:2월이상/기초단체 및 공인연구기관 프로젝트계획서 제출실적(1건 이상)				
D		전공연수(원격연수포함):12시간이상(1일6h인정)/산업체현장지도·연수 1월이상					
E		전공연수(원격연수포함):6시간이상(1일6h인정)/산업체현장지도·연수:1월미만					
		※ 교육부 등 교육연수기관(산업체포함) 및 학회 등의 공인된 연수실적을 말함.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규정번호	KTC-D-19
제정일자	2005.12.01
개정일자	2017.11.07
관리부서	교 학 처

17/27

평점 항목	평 가 기 준			비고
	세부평점 항목	등급	평 점 항 목 세 부 기 준	
① 강의여건 구성 실적 및 정원관리 (10점)	A	*신입생충원율 100%이상(학과/개인별공통:충족) / 재학생 충원율 90%이상 / 중도탈락율 5% / 휴·결강 0회	*평가 기간내 평균 / 공통 충족	
	B	*평가기준 : 95%이상 / 80%이상 / 6% / 1회		
	C	*평가기준 : 90%이상 / 70%이상 / 7% / 2회		
	D	*평가기준 : 85%이상 / 60%이상 / 8% / 3회		
	E	*평가기준 : 85%미만 / 50%이상 / 9%이상 / 4회이상		
		*신입생 충원율은 정원내로 한다.		
② 교육과정 개발실적 (10점)	A	(대학/학과) 정규교육과정 외 운영실적 및 참여실적(2년) + -전공심화과정,산업체위탁교육,평생교육 및 교수학습프로그램 등 운영 (대학) 각종평가 및 프로젝트 운영실적(4회) -대학특성화,NCS교수학습,기관평가,4년제평가,교원양성평가 교수학습프로 그램 등	*평가 기간내 평균 / 공통 충족	
	B	*평가기준 : 1년 + 3회		
	C	*평가기준 : 6월 / 2회		
	D	*평가기준 : 3월 / 1회		
	E	*평가기준 : 3월미만 / 실적이 없는자		
③ 교원지위 향상실적 (포상 및 징계사항) (5점)	A	대학구조조정 제외학과 + 징계사실이 없는자 + 행정수행능력 및 실적양호한 자 / 훈·포장 및 교육부총리,장·차관급이상 표창	*평가 기간내 평균 / 개별 충족 * 교육부 및대학 차원의 구조 조정 제외	
	B	대학구조조정 학과(통.폐합,정원감축 등) + 징계처분(경고)자 + 사법기관처분(기소유예)자(표창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행정수행능력 및 실 적 중 한번 경고 받은 자 / 광역단체장, 총장이상 표창		
	C	대학구조조정 학과(통.폐합,정원감축,신설 등) + 징계처분(견책)자 + 사법기관처분(벌금형)자 + 행정수행능력 및 실적 중 두번 경고 받은 자 / 기초단체장이상 표창		
	D	대학구조조정 학과(통.폐합,정원감축,폐과후 신설 등) + 징계처분(감봉이상) 자+ 사법기관처분(집행유예 이하)자 + 행정수행능력 및 실적중 세번 경고 받은 자 / 사회단체장이상 표창(공로패)		
	E	대학구조조정 학과(통.폐합,정원감축,폐과후신설,전공전환,학과전환발령 등) + 징계처분(정직이상)자 + 사법기관처분(집행유예 이상)자 행정수행능력 및 실적이 극히 불량한 자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규정번호	KTC-D-19
제정일자	2005.12.01
개정일자	2017.11.07
관리부서	교 학 처

18/27

평점 항목	평 가 기 준			비고
	세부평점 항목	등급	평 점 항 목 세 부 기 준	
① 학생취업 지도실적 (15점)	A	*학과취업률 80% 이상 (학과/개인별공통:충족) - 20명 이상의 학과는 소속학과의 지도(반) 취업률	*평가 기간내 평균 / 개별 충족 * 예체능 별도 2-2-1	
	B	*학과취업률 75% 이상(학과/개인별공통:충족) - 20명 이상의 학과는 소속학과의 지도(반) 취업률		
	C	*학과취업률 70% 이상(학과/개인별공통:충족) - 20명 이상의 학과는 소속학과의 지도(반) 취업률		
	D	*학과취업률 65% 이상(학과/개인별공통:충족) - 20명 이상의 학과는 소속학과의 지도(반) 취업률		
	E	*학과취업률 65% 미만(학과/개인별공통:충족) - 20명 이상의 학과는 소속학과의 지도(반) 취업률		
② 학생취업 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지도 교수활동 실적 (5점)	A	학생취업프로그램운영(산업체취업교육,창업,자격증,특허 등) 12회이상 / (취업관련)학생지도활동(동아리지도교수 등) 2년이상/(간호)지도교수 개인별 국가고시 합격률(100%이상)	*평가 기간내 평균 / 공통 충족	
	B	학생취업프로그램운영(산업체취업교육,창업,자격증,특허 등) 9회이상 / (취업관련)학생지도활동(동아리지도교수 등) 1년이상/(간호)지도교수 개인별 국가고시 합격률(97%이상)		
	C	학생취업프로그램운영(산업체취업교육,창업,자격증,특허 등) 6회이상 / (취업관련)학생지도활동(동아리지도교수 등) 6월이상/(간호)지도교수 개인별 국가고시 합격률(95%이상)		
	D	학생취업프로그램운영(산업체취업교육,창업,자격증,특허 등) 3회이상 / (취업관련)학생지도활동(동아리지도교수 등) 6월미만/(간호)지도교수 개인별 국가고시 합격률(90%이상)		
	E	학생취업프로그램운영(산업체취업교육,창업,자격증,특허 등) 1회미만 / (취업관련)학생지도활동(동아리지도교수 등)실적이 없는 자		
		※해당 동아리가 대회 입상한 경우 대회 1회당 1점, 2인이상 지도하는 경우 1/n		
③ 사회봉사 활동 및 대학발전 기여실적 (10점)	A	사회봉사활동 5시간이상/대학본부보직(행정부처장,단장)1년이상/ 외부기관 단체로부터 장학,기부금,기자재(600만원 이상)를 대학에 유치한 실적 / 국제기구 및 정부기관 지원 활동(임원 자문 및 심사)	*평가 기간내 평균 / 개별 충족	
	B	사회봉사활동 4시간 이상 / 학과보직(학과장) 1년 이상/ 외부기관 단체로부터 장학,기부금,기자재(400만원 이상)를 대학에 유치한 실적 / 광역자치단체, 대학및기초자치단체 지원 활동(임원자문 및 심사)		
	C	사회봉사활동 3시간 이상 / 기타 보직수당을 받는 보직 1년 이상 외부기관 단체로부터 장학,기부금,기자재 (400만원 미만)를 대학에 유치한 실적 / 일반기업지원 활동(임원 자문 및 심사)		
	D	사회봉사활동 1시간 이상 / 기타 보직수당을 받는 보직 1년 미만 외부기관 단체로부터 장학,기부금, 기자재(100만원 이상)를 대학에 유치한 실적 / 일반기업지원 활동(임원 자문 및 심사)		
	E	대학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규정번호	KTC-D-19
제정일자	2005.12.01
개정일자	2017.11.07
관리부서	교 학 처

19/27

평점 항목	평가 기준			비고
	세부평점 항목	등급	평점 항목 세부 기준	
산학협력 (30 점)	① 취업실적 (10점)	A	산업체 취업추천 30회이상 / 산업체 발굴 및 방문실적 30회이상	*평가 기간내 평균 / 개별 충족
		B	산업체 취업추천 26회이상 / 산업체 발굴 및 방문실적 26회이상	
		C	산업체 취업추천 22회이상 / 산업체 발굴 및 방문실적 22회이상	
		D	산업체 취업추천 18회이상 / 산업체 발굴 및 방문실적 18회이상	
		E	산업체 취업추천 18회미만 / 산업체 발굴 및 방문실적 18회미만	
	② 산학협력 활동 (10점)	A	학생현장실습,인턴십지도 12회이상 / 산학협력교육 12회 이상 / 산학군관협력체결실적(학과:15또는 개인:12) /사업훈련교육 9회 이상 / 연구비 수혜 5천만원이상 (항목별/1년기준)	*평가 기간내 평균 / 개별 충족
		B	학생현장실습, 인턴십지도 9회이상 / 산학협력교육 9회 이상 / 산학군관협력체결실적(학과:12또는 개인:9) /사업훈련교육 6회 이상 / 연구비 수혜 4천만원이상 (항목별/1년기준)	
		C	학생현장실습, 인턴십지도 6회이상 / 산학협력교육 6회 이상 / 산학군관협력체결실적(학과:9또는 개인:7) /사업훈련교육 3회 이상 / 연구비 수혜 3천만원이상 (항목별/1년기준)	
		D	학생현장실습, 인턴십지도 3회이상 / 산학협력교육 3회 이상 / 산학군관협력체결실적(학과:7또는 개인:5) /사업훈련교육 2회 이상 / 연구비 수혜 2천만원이상 (항목별/1년기준)	
		E	학생현장실습, 인턴십지도 3회미만 / 산학협력교육 3회 미만 / 산학군관협력체결실적(학과:7또는 개인:5)미만 / 사업훈련교육 2회 미만 / 연구비 수혜 2천만원미만 (항목별/1년기준)	
	③ 산학연 봉사 참여 활동 (10점)	A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 임원 / 심사 / 자문활동/ 경영(기술)지도(10회이상)	*평가 기간내 평균 / 개별 충족
		B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 임원 / 심사 / 자문활동/ 경영(기술)지도(8회)	
		C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 임원 / 심사 / 자문활동/ 경영(기술)지도(6회)	
		D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 임원 / 심사 / 자문활동/ 경영(기술)지도(4회)	
		E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 임원 / 심사 / 자문활동/ 경영(기술)지도(2회미만)	

※ 평가점수는 세부평점 항목별 점수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규정번호	KTC-D-19
제정일자	2005.12.01
개정일자	2017.11.07
관리부서	교 학 처

20/27

(별지 제4호서식) (제7조2항관련) <개정 2006.1.13, 2012.3.1, 2014.7.11>

교원 (재임용·승진)심사 신청서

소 속	성명	제출현황		직위(급)	
임용일	심사기간	제출부수	제출	기타	
심사 제출 목록	심사자료 목록			확인	비고
	연구실적목록/연구실적물	3			•논문/저서 등
	1. 학문연구 1) 연구실적 2) 연구실적물의 질 3) 연수실적(연수/산업체현장 연수) 및 연구프로젝트 참여	1			
	2. 학생교육 1) 강의여건조성실적 및 정원관리 2) 교육과정개발실적 및 산학협력실적 3) 교원지위향상실적 (포상 및 징계사항)	1			
	3. 학생지도 1) 학생취업지도실적 2) 현장실습지도/동아리지도교수활동 3) 사회봉사활동/대학발전기여실적	1			
	4. 산학협력 1) 취업지도 2) 산학협력활동	1			

상기 본인은 20 년 전반기, 후반기 재임용, 승진심사를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와 같이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제출(신청)자 : (인)

강원관광대학교총장 귀하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규정번호	KTC-D-19	21/27
제정일자	2005.12.01	
개정일자	2017.11.07	
관리부서	교 학 처	

연구실적목록

순번	제 목(요 약)	발표년월일	발표기관지	저 자		매수	비고
				단독	공동		
1	제)						
2	제)						
3	제)						
4	제)						
5	제)						
6	제)						

상기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상위없음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강원관광대학교총장 귀하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규정번호	KTC-D-19
제정일자	2005.12.01
개정일자	2017.11.07
관리부서	교 학 처

24/27

학 생 지 도 · 봉 사

순번	구 분	제 목	일 자	항목별 세부내용	첨부서류	비고
1	학생취업 지도실적					
2	현장실습 지도 및 동아리 지도교수 활동실적					
3	사회봉사 활동 및 대학발전 기여실적					

상기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상위없음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강원관광대학교총장 귀하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규정번호	KTC-D-19
제정일자	2005.12.01
개정일자	2017.11.07
관리부서	교 학 처

25/27

산 학 협 력

순번	구 분	제 목	일 자	항목별 세부내용	첨부서류	비고
1	취업 지도					
2	산학 협력 활동					

상기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상위없음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강원관광대학교총장 귀하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규정번호	KTC-D-19
제정일자	2005.12.01
개정일자	2017.11.07
관리부서	교 학 처

26/27

[별표 5] <신설2013.08.08>

교원 승진임용 심사신청서

항 목	세부내용
① 교육성과개선을 위한 노력	○신입생충원 ○재학생충원 ○취업률제고 ○중도탈락율 ○학과변경현황(폐과⇒신설)
②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대학발전을 위한 공헌도 -장학금 및 발전기금(물품)기부 및 유치 ○지역발전을 위한 공헌도 -산학협력활동 및 지역과의 협력활동 -봉사활동
③ 교육자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한 노력	○대내·외 포상실적 ○징계 및 민원발생 여부 ○업무이행 준수 여부
④ 교수연구 및 학생지도	○교육연구향상 실적 ○강의개선활동 ○학생진로 및 상담활동

상기 본인은 교원 승진임용 심사를 받고자 위와같이 교원 승진임용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속: 직급 : 성명 : (인)

1. 해당항목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여야한다.
2. 현직급 임용기간내의 사항만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3.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 할 수 있다.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시행규정

규정번호	KTC-D-19
제정일자	2005.12.01
개정일자	2017.11.07
관리부서	교 학 처

27/27

[별표 6] <신설2013.08.08>

교원 승진임용 심사평정표

피평정자	
소 속	
직 급	
성 명	

평 정 자 (교수업적평가위원)	
위원	(서명)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평 점				
			A	B	C	D	E
평정사항	① 교육성과개선을 위한 노력	5	5	4	3	2	0
	②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5	5	4	3	2	0
	③ 교육자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한 노력	5	5	4	3	2	0
	④ 교수연구 및 학생지도	5	5	4	3	2	0
	소 계	20					

의견	
----	--